

예 산 총 칙

2016년도 추경 4 회

제 1 조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380,179,558	11,405,387
일반회계		365,186,749	10,955,602
특별회계		14,992,809	449,784
기타특별회계	의료급여사업특별회계	1,306,615	39,198
	농공지구조성및관리특별회계	4,864,001	145,920
	주차장운영특별회계	779,965	23,399
	공영터미널운영및관리특별회계	193,093	5,793
	삼계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65,990	1,980
	드림빌특별회계	3,052,348	91,570
	주택사업특별회계	70,349	2,110
	건축진흥특별회계	200,000	6,000
	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	666,872	20,006
	상수도사업특별회계	3,793,576	113,807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1,601,756천원으로 한다.

제 4 조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5조 규정에 의한 회계연도중에 내시되는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교부세, 교부금은 예산 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의회에 사후보고한다.(간주예산)